

# 감정평가서

## APPRAISAL REPORT

건명 : 이소영 소유물건 (2025타경102250)

의뢰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한태연

번호 : 자호 제 GD2025-030001호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호감정평가사사무소

JAHO APPRAISAL OFFICE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26, 2층

TEL. (02)933-1900 / FAX. (02)933-1901

##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금 동 구

(인)

감정평가액	삼억칠천칠백만원정 (₩377,000,000.-)					
의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한태연	감정평가 목 적	법원경매			
제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21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이소영 (2025타경102250)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 거	귀 제시목록 등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5.03.06	2025.03.05 ~ 2025.03.06	2025.03.06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구분건물	1개호  이	구분건물	1개호  하  여	-  백	377,000,000
	합 계					₩377,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I 감정평가 개요

### 1. 대상물건 개요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교육대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서초다산빌라주건축물제1동' 제2층 제204호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 2. 기준시점

- 감정평가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완료일을 기준으로 2025년 03월 06일로 함.
- 2025년 03월 05일 ~ 2025년 03월 06일까지 실지조사 및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및 거래가격수준 등을 확인하였음.

###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 기준가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 감정평가조건  
없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4. 대상물건의 확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6-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12길 37]						
건물명 및 층·호수	서초다산빌라주건축물제1동 제2층 제204호						
일련번호	층/호수	면적(㎡)			소유권 대지권 (㎡)	용도	사용승인일
		전유	공용	합계			
1	2/204	29.37	5.22	34.59	17.93575	다세대주택	2017.02.17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5.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관련 제 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 이론에 의거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대상물건은 토지의 소유권대지권과 건물이 일체로서 거래되는 구분건물이므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각각 산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출하는 원가법의 적용은 적절하지 아니함. 또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 시산가액을 산출하기에는 유사물건의 임대료 수준과 환원이율이 충분히 안정적이지 못하여, 수익환원법의 적용 역시 적절하지 아니함. 따라서, 주된 감정평가방법 외의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의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가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여, 원가법과 수익환원법의 적용은 생략하였음.

- 위 규정에 따라,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소유권대지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6. 그 밖의 사항

- 본 감정평가서는 경매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경매 목적 외 다른용도(담보, 소송 등)로 사용 될 수 없음.
- 대상물건의 소재지, 지번, 면적, 층, 호수 및 이용상황 등은 귀 제시목록 등에 의거하였음.
- 대상물건의 내부구조는 잠금장치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현황도면, 외부관찰 및 표준적 이용상황 등을 기준하여 후첨 '내부구조도'와 같이 표기 하였으며, 실제사항과 상이 할 수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입찰시 반드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재확인 바람.
- 토지·건물 가격 배분은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발행한 '공동주택 토지·건물 배분비율 작성 연구'(한국부동산연구원, 2021.12.31.)를 참고하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배분비율을 적용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II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1.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

비교사례의 선정

#### 1) 감정평가전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화시스템 등)

기호	소재지	층/호수	전유면적 (㎡)	이용상황	감정평가 목적	기준시점	감정평가액(원)
						사용승인일	(원/전유면적㎡)
①	서초동 1564-15	2/2**	26.23	다세대주택	법원경매	2023.10.21	296,000,000
						2016.09.27	(약 11,284,788)
②	서초동 1565-1외	5/5**	42.74	다세대주택	법원경매	2024.11.13	593,000,000
						2016.08.29	(약 13,874,591)

#### 2)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층/호수	전유면적 (㎡)	이용상황	거래시점 (계약일 기준)	거래가액(원)	출처
					사용승인일	(원/전유면적㎡)	
㉠	서초동 1565-1외	3/3**	27.32	다세대주택	2024.07.18	360,000,000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16.08.29	(약 13,177,160)	
㉡	서초동 1617-15	5/5**	34.33	다세대주택	2024.09.26	450,000,000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18.04.27	(약 13,108,069)	

#### 3) 인근지역 유사부동산의 거래가격수준

용도	거래가격수준	조사처
다세대주택	본건 전유면적당 : 약 12,500,000 ~ 13,000,000원/㎡ 내외 수준	인근 부동산 등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4) 비교사례의 선정

감정평가대상 부동산과 전유면적 등에서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사례㉠을 비교사례로 선정함.

기호	소재지	층/호수	전유면적 (㎡)	이용상황	거래시점 (계약일 기준)	거래가액(원)	출처
					사용승인일	(원/전유면적㎡)	
㉠	서초동 1565-1	3/3**	27.32	다세대주택	2024.07.18	360,000,000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16.08.29	(약 13,177,160)	

#### □ 사정보정

비교사례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1.000).

#### □ 시점수정

- 일련번호 1/비교사례 ㉠

대상물건은 구분건물[다세대주택]로서, 한국부동산원이 매월 발표하는 '서울 강남지역 동남권 매매가격지수(연립다세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치를 산정함.

#### 1) 시점수정치 산출 (2024.07.18 ~ 2025.03.06)

$$\frac{2025년\ 01월}{2024년\ 06월} = \frac{102.0}{100.6} \approx 1.01392$$

※ 기준시점 : 2025.03.06, 2025년 02월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발표이전 이므로 2025년 01월 지수를 적용 함.

※ 거래시점 : 2024.07.18, 2024년 06월 지수를 적용 함.

#### 2) 시점수정치의 결정

상기의 지수로 결정하였음(1.01392).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가치형성요인비교

■ 주거용

조 건	항 목	비교 사례㉠	일련번호 1	비 고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 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풍치,경관 등) 등	1.00	1.00	유사함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1.00	1.00	유사함
호별 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1.00	0.96	비교사례 대비 층별효용 및 전유부분의 면적 등에서 열세함.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1.00	유사함.
개 별 요 인 비 교 치		1.000	0.960	-

□ 산정단가의 결정

일련 번호	비교사례단가 (원/전유㎡)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산정단가 (원/전유면적㎡)
1	13,177,160	1.000	1.01392	0.960	12,826,163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일련 번호	층/호수	전유면적 (㎡)	소유권대지권 (㎡)	전유면적당 단가 (원/㎡)	산출금액 (원)	시산가액 (원)
1	2/204	29.37	17.93575	12,826,163	376,704,407	377,000,000
합 계		-	-	-	-	377,000,000

## 2.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감정평가방법의 적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고, 인근의 감정평가전례, 거래사례, 거래가격수준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상기와 같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끝.

#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1동의 건물의 표시	1626-10 서초다산 빌라 주건축물 제1동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5층			377,000,000	비준가액 (집합건축물 대장상 공용 면적등 포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층	82.47				
	[도로명주소]				2층	131.46				
	서울특별시				3층	131.46				
	서초구				4층	131.46				
	서초중앙로12길 37				5층	131.4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제204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9.37			29.3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6-10	대			-	321.5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17.93575						
대지권의비율 :			1.	321.5 x ----- 321.5	17.93575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 지 :	301,600,000				
					건 물 :	75,400,000				
<b>합 계</b>							<b>₩377,000,000.-</b>			
이 하					여 백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교육대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임.

##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5층 건물 내 제2층 제204호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 호 : 새시 창호 등임.

## (4) 이용상태

일련번호 1은 ‘다세대주택’ 으로 이용중임.

## (5) 설비내역

통상의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건부지로 이용중임.

###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의 동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도로에 접함.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토지전산망의 내용은 참고사항일뿐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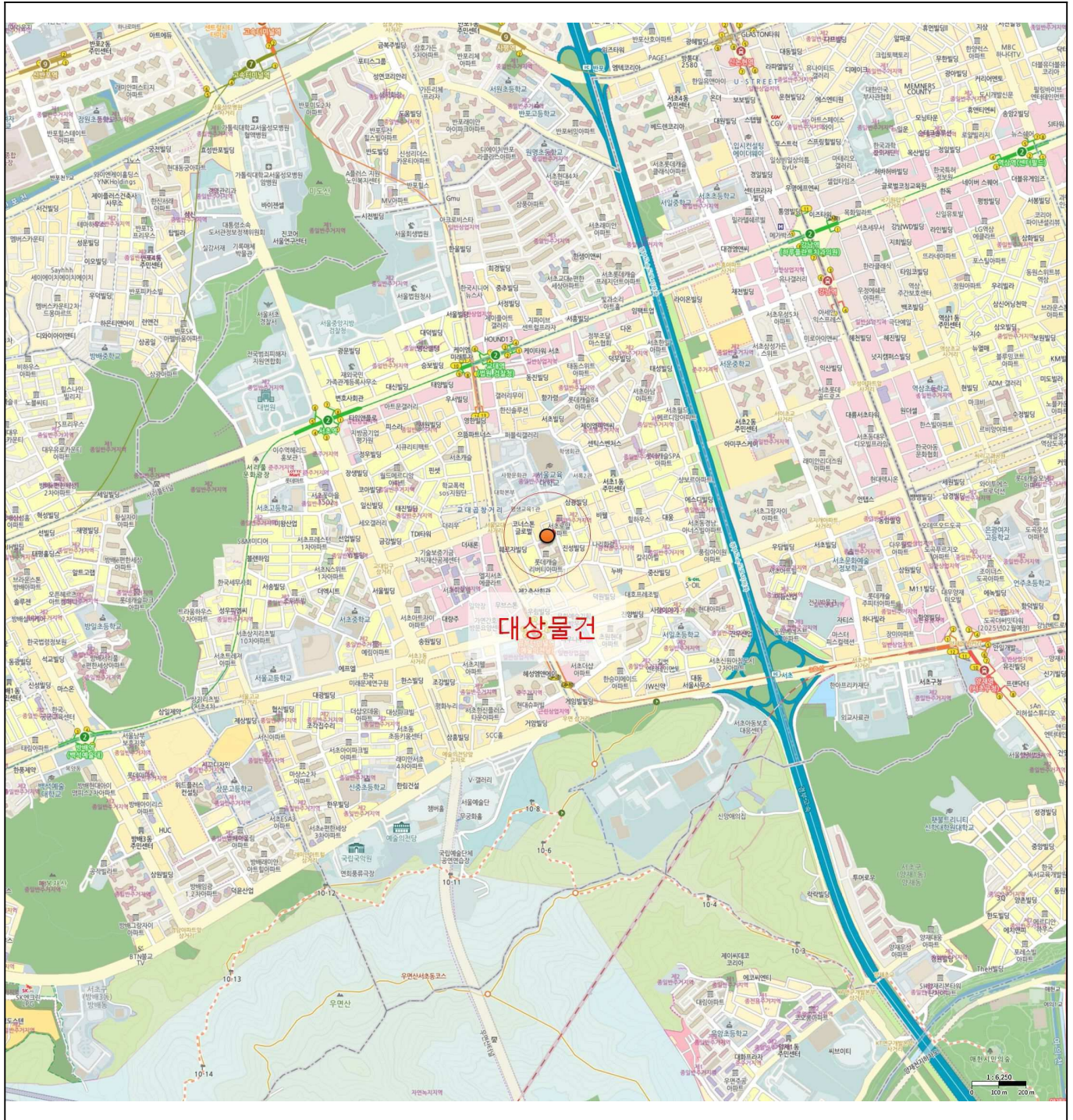
- 기타 없음.

# 광역위치도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6-10 서초다산빌라주건축물제1동 제2층 제204호



# 위 치 도



##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6-10 서초다산빌라주건축물제1동 제2층 제20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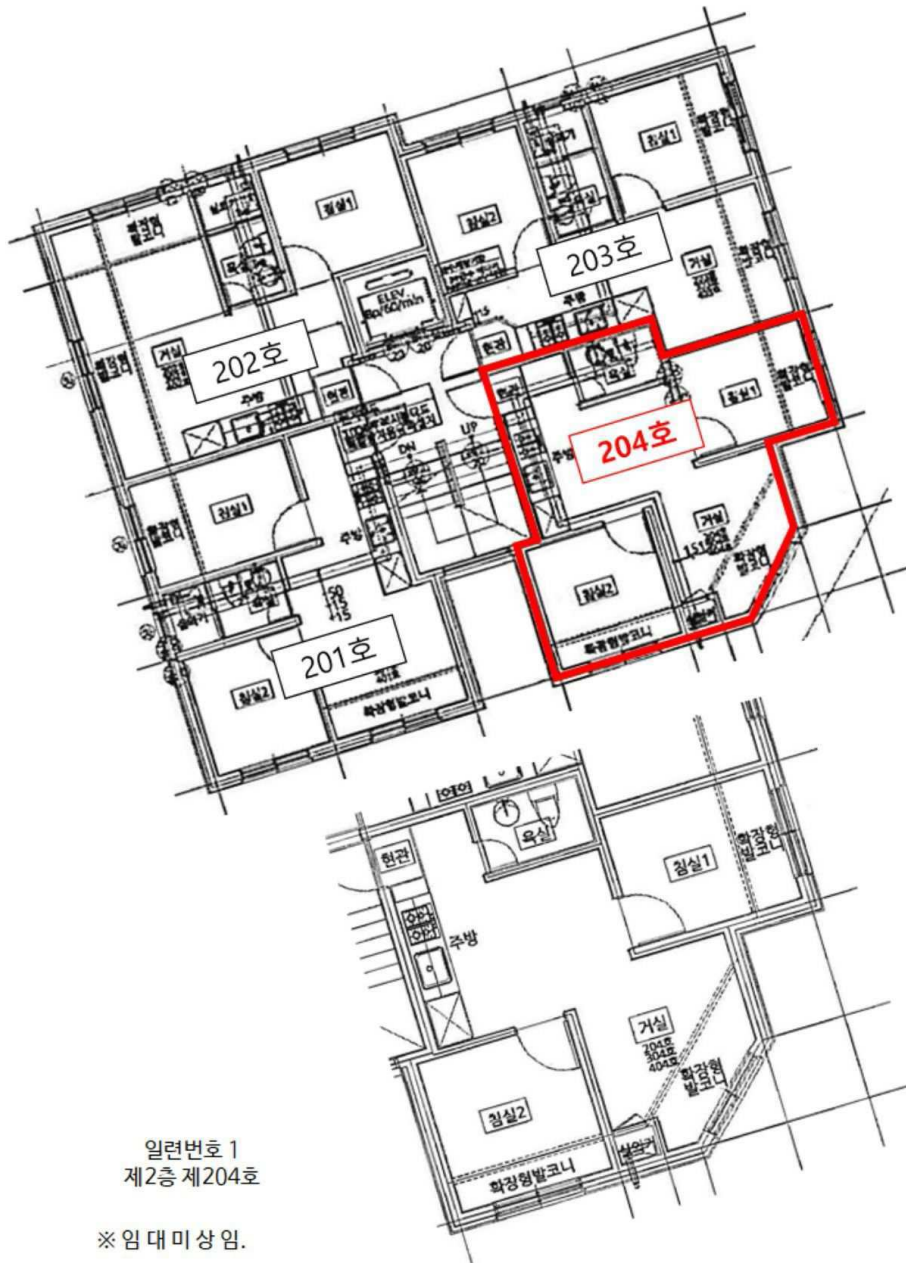


# 내부 구조도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6-10 서초다산빌라주건축물제1동 제2층 제204호



대상물건의 내부구조는 잠금장치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현황도, 외부관찰 및 표준적  
 이용상황 등을 기준하여 표기 하였으며, 실제사항과 상이 할 수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입찰시 반드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재확인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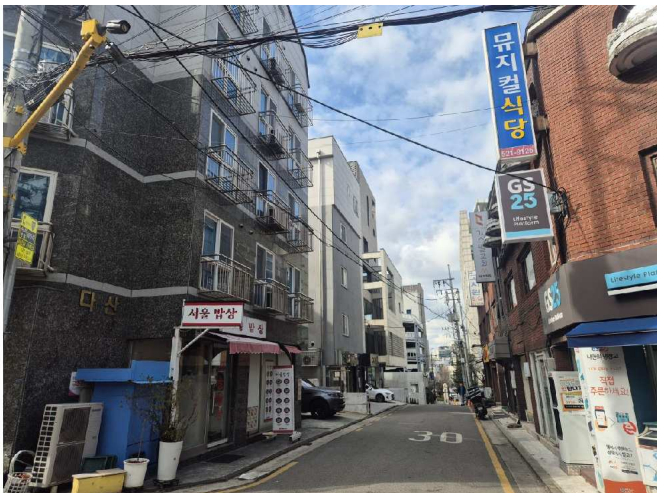
#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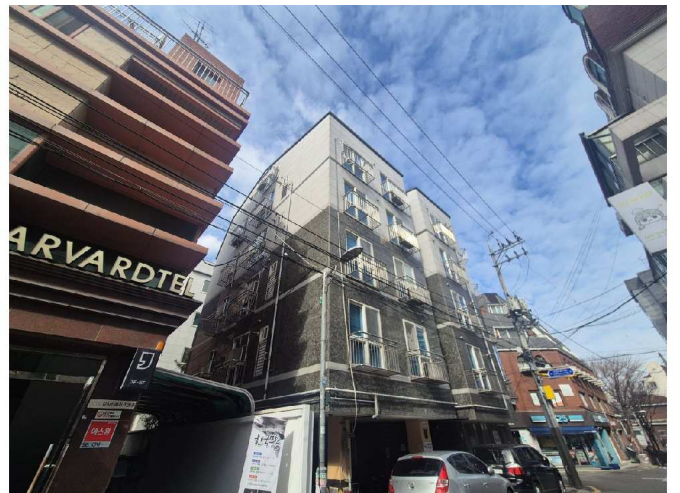
대상물건이 속한 건물의 전경



대상물건이 속한 건물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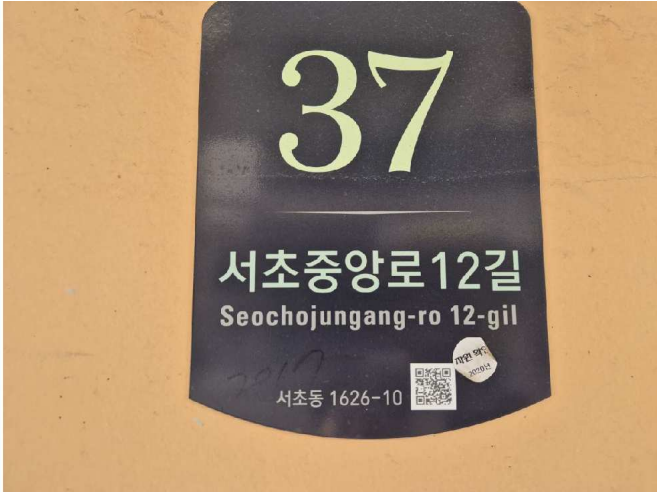


대상물건이 속한 건물의 주위전경



대상물건이 속한 건물의 주위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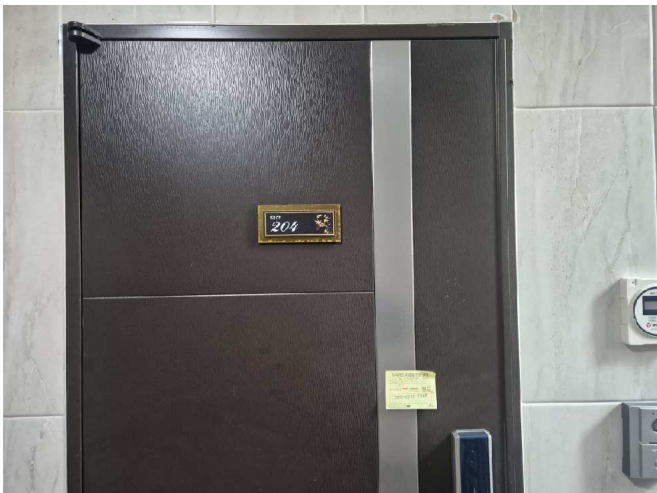
#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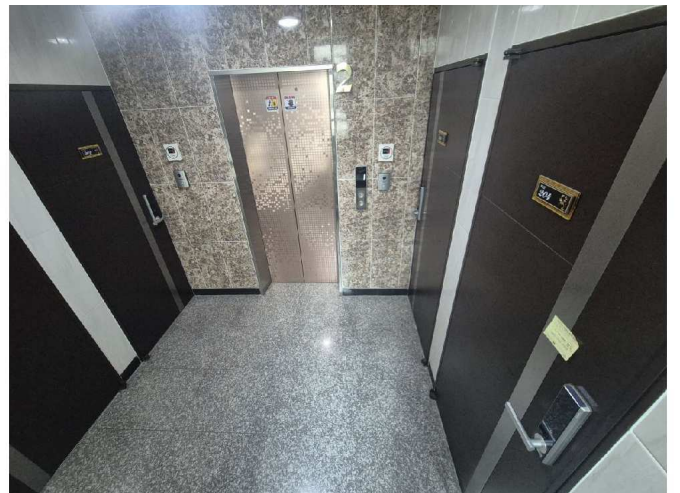
도로명주소 명판



공동출입구 전경



일련번호 1 출입구 전경



일련번호 1 출입구 및 복도 전경